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2886

제출일자 : 2026. 9. 28.
제 출 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법제처의 2025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 정비 권고에 따라 공공시설(이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법령 위반 소지를 해소하고, 상위 법령에 부합하도록 농기계 임대료 산정기준을 정비함으로써 농기계임대사업을 적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시설 사용자(이용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내용 삭제
(안 제13조제4항 삭제)

나. 임대료 산정기준 변경(안 별표 1)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붙임

(1)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2) 「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제5항

(3)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기타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입법예고(2026. 8. 6. ~ 8. 26.)결과 : 의견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6) 부서합의 : 해당사항 없음

(7)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달성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을 삭제한다.

별표 1 가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농기계 임대료

농기계 구입가격	임대료(1회당)
1) 100만원 미만	9,000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0,0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3,000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7,000원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0,000원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4,000원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28,000원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2,000원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35,000원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0,000원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56,000원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73,000원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94,000원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11,000원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40,000원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60,000원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70,000원
18) 4,500만원 이상	180,000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기계 임대료 개정규정의 적용례) ① 별표 1 가항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이 조례 시행 후 그 계약을 갱신할 때에는 별표 1 가항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table>
<tr><th>현 행</th><th>개 정 안</th></tr>
<tr><td>제13조(임차인의 책임)
① ~ ③ (생 략)
④ 농기계를 출고한 후에 발생하는 인적·물적 피해 사고 등에 대하여는 임차인이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별표 1]
가. 농기계 임대료
<table><tr><th>농기계 구입가격</th><th>임대료(1회당)</th></tr><tr><td>1) 100만원 미만</td><td>5,000원</td></tr><tr><td>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td><td>6,000원</td></tr><tr><td>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td><td>7,000원</td></tr><tr><td>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td><td>9,000원</td></tr><tr><td>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td><td>11,000원</td></tr><tr><td>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td><td>14,000원</td></tr><tr><td>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td><td>16,000원</td></tr><tr><td>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td><td>18,000원</td></tr><tr><td>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td><td>20,000원</td></tr><tr><td>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td><td>23,000원</td></tr><tr><td>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td><td>32,000원</td></tr><tr><td>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td><td>42,000원</td></tr><tr><td>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td><td>55,000원</td></tr><tr><td>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td><td>65,000원</td></tr><tr><td>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td><td>80,000원</td></tr><tr><td>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td><td>92,000원</td></tr><tr><td>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td><td>97,000원</td></tr><tr><td>18) 5,000만원 이상</td><td>105,000원</td></tr></table></td><td>제13조(임차인의 책임)
①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별표 1]
가. 농기계 임대료
<table><tr><th>농기계 구입가격</th><th>임대료(1회당)</th></tr><tr><td>1) 100만원 미만</td><td>9,000원</td></tr><tr><td>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td><td>10,000원</td></tr><tr><td>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td><td>13,000원</td></tr><tr><td>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td><td>17,000원</td></tr><tr><td>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td><td>20,000원</td></tr><tr><td>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td><td>24,000원</td></tr><tr><td>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td><td>28,000원</td></tr><tr><td>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td><td>32,000원</td></tr><tr><td>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td><td>35,000원</td></tr><tr><td>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td><td>40,000원</td></tr><tr><td>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td><td>56,000원</td></tr><tr><td>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td><td>73,000원</td></tr><tr><td>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td><td>94,000원</td></tr><tr><td>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td><td>111,000원</td></tr><tr><td>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td><td>140,000원</td></tr><tr><td>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td><td>160,000원</td></tr><tr><td>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td><td>170,000원</td></tr><tr><td>18) 4,500만원 이상</td><td>180,000원</td></tr></table></td></tr>
</table>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농업기계의 임대사업) ①법 제8조의2제2항에서 “여성농업인 및 고령농업인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2. 11.>

1.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농업인
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65세 이상인 농업인
3. 「장애인 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②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16. 2. 11., 2022. 6. 16.>

■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개정 2022. 6. 16.>

임대사업 시행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1. 농업기계의 임대료 기준

가. 농업기계의 1일 임대료는 농업기계의 구입가격에 따라 아래의 산정방식으로 산정한다.

농업기계 구입가격	1일 임대료
1) 100만원 미만	10,000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12,0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15,000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19,000원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23,000원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	28,000원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	32,000원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	36,500원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	41,000원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46,000원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	65,000원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	85,000원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	110,000원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	130,000원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	160,000원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185,000원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	195,000원
18) 4,500만원 이상	210,000원

나. 가목에 따른 농업기계 1일 임대료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를 30일 이상의 중·장기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가목에서 산정한 1일 임대료의 ± 3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가목에 따라 산정한 임대료의 ±15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농업인의 경영안정이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목에 따른 1일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2.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실시한다.

3. 임대사업용 농업기계에는 관리번호를 부착하여 관리한다.

4. 그 밖에 임대사업에 필요한 세부 시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